

인권 정책

제정: 2025.03.17

(주)우성정공, (주)우성메텍(이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인권 존중 및 보호 책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회사는 국내 노동 · 인권 법령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인권 이행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국제적으로 선언된 노동 · 인권 기준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회사가 경영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사업 및 밸류체인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본 정책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국내의 임직원(비정규직 포함), 자회사, 협력업체, 하청업체 및 합작법인에게 적용된다. 회사와 사업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고객 파트너사 서비스 유통 물류를 포함한 전 밸류체인에도 동일한 수준의 준수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대동기어업의 모든 경영 활동 상품 및 서비스가 본 인권정책의 방침을 준수하여 밸류체인 내 모든 구성원과 고객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2장 인권지침

제3조 (기본원칙)

회사는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예방 완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1. 인신매매 금지

회사는 전 공급망에 걸쳐 인신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2. 강제노동 금지

폭행, 협박, 감금, 여권 및 신분증 보관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모든 종류의 비자발적인 근로와 서비스를 금지한다.

3. 아동노동 금지

15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고용을 금지한다.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가 필요할 경우 현지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하에 고용 및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4. 비인도적 대우 금지

고문 행위와 폭행, 폭언 굴욕적인 대우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지한다.

5. 보호대상 근로자 보호

연소자, 임산부, 장애인 등 보호대상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초과근로, 금지직종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호한다.

6.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7. 보건 및 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도구, 장비,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8.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국제 협약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보복을 하지 않는다.

9. 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10. 공정 보상 및 동등급여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장려하고 공정한 고용 및 보상을 보장한다. 근로조건에서 성별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한다.

11. 생활 임금 보장

모든 국가에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임금(living wage) 지급 원칙을 준수한다.

*국내(대한민국)의 임직원의 생활임금((living wage)은 당해 서울시 시간당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12. 다양성 존중 및 차별금지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정치적 견해,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고용,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장려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13.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 신체적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금지한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14. 고객인권 존중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록과 저장을 최소화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5. 지역주민(원주민) 인권 존중

사업 운영 시 지역주민(원주민)의 토지, 산림, 수자원에 대한 권리 보장 및 강제 퇴거 금지 등 지역주민(원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제4조 (위반 및 조치)

1. 회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 계약 배제,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 침해행위 발생 시 조사를 실시하고 견책, 정직,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할수있다.

※인권 관련 제보 채널

인권관련 제보는 서기현(mingyu98@naver.com)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제보는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보자는 기밀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부당한 보 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주) 우성정공, (주)우성메텍 대표이사
성현석